

문서번호	주택과-12965
결재일자	2015. 5. 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청번호	

★ ◎

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

주무관	주택행정팀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과장
신경숙	이규환	박봉주	05/12 윤호중
협	공원녹지과장	권세동	
조	재무과장	김성철	
	기획예산과장	이윤영	

- 2015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-
직접시행(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) 계획

2015. 5.



성 동 구
【 주택 과 】

2015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
직접시행(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) 계획

「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」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사업을 구(區)에서 직접 시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설치검사 이행으로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마련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「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【주택과-1746(2015.1.16.)】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

II 사업개요

- 대상단지: 옥수극동그린 등 8개 단지
- 총사업비: 228,265천 원
 - 공동주택 부담금 115,439천 원, 구(區) 지원금 112,826천 원
- 사업시행: 공원녹지과
 - 내 용: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(포장, 조합놀이대, 놀이시설 등)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교부
- 사업비 집행: 사업비 대비 단지별 자부담 및 지원금 비율에 따라 공동주택 자부담금(세입세출외현금)과 구(區) 지원사업비 매칭
- 사업기간: 2015. 5. ~ 2015. 12.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

(제정 2007.1.26. 시행 2008.1.27.)

- ❖ 법 시행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.1.26.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, 2008.1.27.이후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.
- ❖ 제29조(벌칙):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
○ 사업대상 공동주택

연번	공동주택 명칭	위 치	놀이터 사업비 (단위: 천원)			비 고
			합 계	공동주택 부담금	지원금	
총 액			228,265	115,439	112,826	(14개소)
1	하 왕 청 계 벽 산	무학로 50	79,659	46,202	33,457	(3개소) 왕십리도선동
2	행 당 대 림	행당로 79	40,883	23,712	17,171	(1개소) 행당제2동
3	금 호 대 우	독서당로 272	27,011	10,804	16,207	(2개소) 금호4가동
4	금 호 롯 데	동호로 84	14,650	5,860	8,790	(1개소) 금호4가동
5	옥 수 극 동 그 린	독서당로 175	36,382	14,553	21,829	(3개소) 옥수동
6	옥수한남하이츠	독서당로 156	13,530	7,847	5,683	(2개소) 옥수동
7	성 수 신 장 미	왕십리로 66-15	10,295	4,895	5,400	(1개소) 성수1가제1동
8	용답YM프라젠	자동차시장1길 14	7,150	2,860	4,290	(1개소) 용답동

※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(금액)은 공동주택의 자부담으로 함

○ 사업추진 흐름도

절 차	일정 (예정)	주 요 내 용
1. 지원사업 신청 ↓ 공동주택	1월~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리주체의 지원 요청사업 자체 선정 신청서류 준비(신청서, 계획서, 산출, 의결서 등)
2. 검토 및 현장조사 ↓ 주택과, 소관부서	3월~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류 검토(지원 요건 및 적합 여부 등) 소관 부서별 현장조사 및 조서 작성
3.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↓ 심의위원회	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실사를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지원 단지 및 금액 결정
4. 지원대상 결정 통보 ↓ 주택과	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별 심의 결과 통보 <지원 단지>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내
5.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↓ 공동주택	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 부담금 결정액 통보(주택과) 공동주택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예치(공동주택)
6. 사업 시행 ↓ 공원녹지과	5월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관부서(공원녹지과) 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설계응역, 주민설명회, 공사, 조달물품 구매 등 -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교부
7. 정산 보고	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준공 후 사업비 정산 보고(공원녹지과→주택과) 정산에 따른 공동주택 부담금 잔액 환급 등 (주택과→공동주택)

III **소요예산**

- 소요예산: 228,265천 원
- 8개 단지 어린이놀이터 사업 지원금 112,826천 원
- ※ 공동주택 부담금 115,439천 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예치

○ 사업비 확보: 예산 변경1)

○ 변경사유: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고 구(區)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동일 사업 내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

○ 예산변경 내역

(단위: 천 원)

단위사업	예 산 과 목			예산액	기 지출액	예산 잔액	금 후 소요액	요구액		사 유
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			증	감	
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	공동주택 지원사업	민간자본 이 전 (402)	민간자본 보 조 (01)	726,000	-	726,000	613,174	-	112,826	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 구(區) 직접시행
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	공동주택 지원사업	사업비 및 부 대 비 (401)	시설비 (01)	-	-	-	-	112,826	-	

IV **행정사항**

- 예산의 변경 기획예산과
- 민간자본이전(402-01) 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(401-01)
- 공동주택 부담금 구(區) 세입세출외현금 입금 재 무 과
- 공동주택 지원사업(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) 시행 공원녹지과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. 끝.

1) **예산의 변경:**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(통계목)간 예산을 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(※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림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)